

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 (제5조제1항 관련)

영업의 종류	영업의 내용
1. 종합건설업	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·보수공사(이에 따른 운영·관리를 포함한다) 나.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
2. 전문건설업	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·보수공사(이에 따른 운영·관리를 포함한다) 나.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
3. 전기공사업	가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·보수공사(이에 따른 운영·관리를 포함한다) 나.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
4. 정보통신공사업	가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·보수공사(이에 따른 운영·관리를 포함한다) 나.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
5. 환경전문공사업	가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·보수공사(이에 따른 운영·관리를 포함한다) 나.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
6. 건설엔지니어링업	가.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및 이를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 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
7.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	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(이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자의 경우 개발을 포함한다). 다만, 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.
8.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	가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. 가목의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